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209504 손해배상(기)
원 고 갑
피 고 을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8.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김00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인 아들이 있다.

나. 김00은 2016년 봄 무렵 지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6. 6.경 피고의 노래방 개업에 도움을 주면서 더욱 가까워져 수시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다. 원고는 2017. 3.경 김00과 피고의 사이를 알았으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김00과 피고를 믿고 한 차례 용서도 하였고, 이후 김00이 지내는 제주도까지 내려 가 만남을 지속하는 피고로부터 직접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라. 김00은 2018. 2. 18.경 설 명절을 보내려고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창원으로 올라와 있던 중 피고의 집을 찾아 가 만남을 가졌다.

마. 원고와 김00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2018. 4. 9.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고 2018. 5.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확인서 (각서)

2018년 2월 17일 김00과 갑은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보고 합의 내용은 자식 A의 양육권과 친권을 김00 앞으로 하고 위자료를 안주는 대신 양육비도 갑에게 받지 않기로 하고 아들 A를 김00이 키우기로 하고 2018년 2월 17일 갑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갔었다. 그 이후 2018년 2월 27일 협의한 내용대로 제주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협의한 내용은 변한 거 없이 2월 17일 말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접수했고 5월 27일까지 숙려기간으로 있었다.

{이하 생략}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갑이 확인하고 갑은 A를 아빠 동의 없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며

2018년 5월 27일 숙려기간 동안 아들 A를 김00이 아닌 누군가가 키우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동의한다.

바. 원고는 2018. 6. 8.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00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00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김00과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그 부정행위의 태양과 정도, 그 행위가 원고와 김00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와 김00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파탄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부 사이에 내포된 가정생활의 문제로 인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무관하게 원고와 김00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2016. 6.경부터 김00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김00의 혼인관계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김00을 비롯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김00 사이에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